

『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
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9월 23일

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
2005년 10월 17일
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신 영 근

나. 제안이유

-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금에 대한 단기간의 이자 보조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미흡하여 이자보전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5조 중 보조기간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라. 참고사항

- 농업·농촌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왔으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보전기간 3년은 농가 소득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
- 하지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WTO 농업협정 보조금 분류상 품목불특정 감축대상보조의 범위, 즉, 총 농업생산량의 10% 초과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